

정보보호의 사각지대 아동 개인정보 보완 시급

아동에 의한 가족 등 관련인 정보 유출 주의 요망



김연수 | KISA연구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저서 고도지식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와 CyberLaw
E-mail kimyonsu@kisa.or.kr



목차

I. 서설

II. 사례

III. 관련 입법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
2. 일본
3. 미국

IV. 법률의 구체적 내용 분석

1. 아동과 법정대리인 보호
2. 법정대리인의 권리
3. 만14세 미만의 아동 보호
4.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V. 처벌에 관한 입법상 함의

VI.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아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을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에 고지·명시해야 한다.
2. 고지·명시 이후에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이용자의 DB를 관리하는 경우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묶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VII. 기타 문제점

I. 서설

인터넷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적어서 해당 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분별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01. 7.1.)되어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청구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II. 사례

갑웹사이트는 유아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부모들로부터 유아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어느 날 을은 자신의 아기 사진이 광고로 홍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제지 및 정정을 요구하였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는 디즈니(Disney)소유의 파산한 장난감 소매 사이트 토이스마트 닷 컴(Toysmart.com)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지난 1998년 체결된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위반하여 보스턴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III. 관련 입법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²⁾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제1항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⁴⁾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에 처한다(제67조 제1항 제11호).

2. 일본

일본의 ECOM 지침은 법정대리인로부터 어린이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ECOM 지침은 어린이에 관한 특별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통산성 공업규격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정보주체가 12세부터 15세까지 연령의 아동일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1999년 1월에 「어린이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OPPA :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98년 의회를 통과하여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COPPA는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 13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절차로 우편이나 팩스, 수신자 부담전화, 암호화된 이메일 등에 의하여 부모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고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하고자 하는 상업적 웹사이트 운영자는 공정한 정보관행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수집된 정보의 사용처, 제3자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조항, 연락처, 담당자 등이 명시된 어린이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인터넷사이트에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어린이 1명당 1,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성인용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온라인 아동보호법이 나이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의 작동 과정에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한 심한 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필라델피아

순회 상고 법원 판사들 중 일부가 온라인 아동 보호법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IV. 법률의 구체적 내용 분석

1. 아동과 법정대리인 보호

아동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동이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아동 및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2. 법정대리인의 권리

만14세미만의 아동이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아동 및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여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 및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에게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 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이용하고 어느 기한까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법정대리인은 아동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수집 자체를 취소하여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제9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1조).

3. 만14세 미만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망법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 만 14세미만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는데,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조(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2조(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만14세미만의 아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와 계약 등 법률행위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미성년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만18세~19세의 미성년자는 대학교 1-2학년 에 재학중이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들도 이동전화, 무선호출, PC통신, 인터넷 등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만14세 미만으로 일률하여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관리 등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하여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이는 서비스의 이용과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와 성격, 환경, 나이, 가족관계, 법정대리인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에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명시 또는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의 의미는 성인에게는 적절한 설명이라도 아동에게 오해를 초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하여서는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허위를 진실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아동이 판단하는데 일반적 객관적으로 이해가 용이해야 한다.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이란 아동의 오해를 유도하는 등

의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V. 처벌에 관한 입법상 흠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그 부모의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수집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수집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500만원이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7조제1항제11호). 부모의 개인정보를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1항제3호).

다만 부모가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아닌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법상 흠결이 있다. 또한 동법 제67조제1항제11호는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VI.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

200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다시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아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을 약관이나 개인정보보호정책 등에 고지·명시해야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동과 관련이 있거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취지와 여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동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고지·명시해야 할 항목은

- 아동에게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이용목적은 쉽게 서술해야 한다.
-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수집하고자 하는 아동의 개인정보(개별항목)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고지·명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는 연락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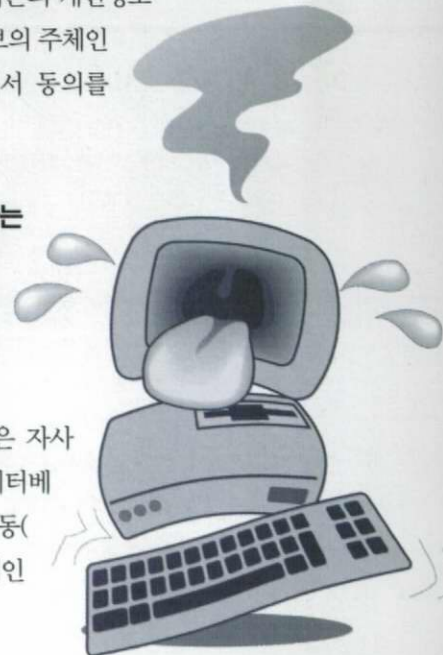
2. 고지·명시 이후에 그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수집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다시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특별히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약관 등에 명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다만 개정 법률에 따라 약관 등에 아동에 관한 정보의 취급 정책을 새롭게 고지·명시하여야 하고, 기존에 고지·명시하였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에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동시에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도 파기하여야 한다).

대체로 기존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명확하게 고지·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 등의 개인정보를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초과범위의 한계가 불명확한데 서비스의 중대한 확장이나 고지·명시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용자의 DB를 관리하는 경우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묶어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은 자사의 회원 등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경우 아동(및 법정대리인 포함)의 개인



정보와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편의상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비스 제공 목적이 달성되거나 서비스의 개선 축소 등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해당 이용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을 일반 이용자와 혼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DB 관리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VII. 기타 문제점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고, 설령 법정대리인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다. ☹

각 주

1)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